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211219 판결 [보증채무금]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성실

담당변호사 김장곤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

담당변호사 박상현

변 론 종 결 2024. 3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44,355,501원 및 그 중 81,622,379원에 대하여 2023. 1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원고는 2017. 8.경 보험대리점인 소외 (주)C(이하 'C')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연12%,연체시 이자 24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채무'),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.

이 사건 채무는 수시로 일부 금원들이 변제되었고, 마지막으로 2021. 2. 2. 1,090,196원이 변제되었으며, 2023. 11. 21. 현재 원리금 합계 144,355,501원, 원금 81,622,379원이 잔존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

### 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44,355,50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81,622,379원에 대하여 2023. 1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의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,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나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. 2. 2.까지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안홍준